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등록번호	지 역 경 제 과-1709
등록일자	2016.1.13.
결 재 일 자	2016.1.14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소비자보호팀장	지역경제과장	기획경제국장	
장유나	김선희	권승원	전결 01/14 <b>김용운</b>	
협 조 자				

## 2016~2019년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운영 계획



2016. 01. .

강 남 구 (지 역 경 제 과)

### - 2016년~2019년 -

## 「유기동물 보호관리」위탁 운영 계획

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동물보호정신에 입각한 구조 및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고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기동물 보호관리용역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.

## Ⅰ ┃ 관 련 근 거

### 1 동물보호법 제1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

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·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

- 1. 도로·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("유실·유기동물"이라 한다)
- 2.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("피학대 동물"이라 한다) 중 소유자를 알수 없는 동물
- 3.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·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

### 동물보호법 제1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

-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.
- ② 시·도지사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###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0조제1항(동물의 구조·보호)

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·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

-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- 5 강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- 6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및 평가기준 (서울시 동물보호과-15982(2013.12.31)
- 7 2016년 유실유기 및 파학대동물 구조보호조차사업 계획(서울시 동물보호과-7592(2015.12.17)
- 2016년 동물 구조보호조치 및 길고양이 중성화시업 시비보조금 지원계획 알림 (서울시 동물보호과-513(2016.1.12)

## Ⅱ 추진경위

- 주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 및 안전 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방견 단속 및 잃어버린 동물을 찾기 쉽도록 하는 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이 요구됨.
-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관리 시 포획인력, 수송차량, 구조 장비, 보호시설, 치료시설, 사체보관시설 등 구에서 직영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 소요되며, 특히 동물보호시설을 관내에 설치 할 경우 혐오시설로 간주되어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전문보호시설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.
- 일부 기준 미달 처리업체의 유기동물 학대 및 방치로 인한 동물보호단체 및 언론 단체의 고발·감시가 확대되는 등 포획동물의 안정적인 관리주체가 필요한 실정임.
- 「동물보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」에 따라 지정제로 선정하도록

서울시로부터 "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"을 통보받아 절차에 맞춰 지정.

- 의 유실동물의 소유자반환 절차 개선 시행(동물보호과-1992호, 2015.02.04., 과업 지시서 서식4참조)함. 유실동물의 소유자 확인, 관련법령 및 동물보호 교육, 미등록 동물의 등록안내 등 유실동물 반환절차를 개선하여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로 재유기 예방하고자 함.
- 유기동물 분양(기증)절차 표준화 및 동물등록실시(동물보호과-1992호, 2015.02.04., 서식4참조), 유기동물 입양 전 입양 적격여부 사전 검토, 소유자 책임·의무 명시한 분양(기증) 계약서 발급, 유기동물 분양(기증)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실시 등을 실시함.
- 의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(동물보호과-7592,2015.12.17),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과 실제 보호기간에 대한 적정비용 지급으로 입양율 증대 및 안락사율 감소 등 동물보호 수준 향상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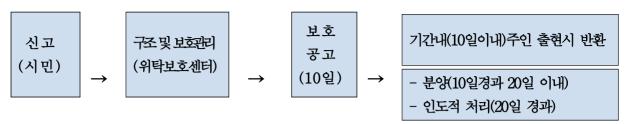
# Ⅲ 유기동물 처리 현황

(단위: 두)

구 분	2015년	2014년	2013년	2012년	2011년	2010년
총 처리두수	210	219	317	505	602	703
<b>7H</b>	157	173	197	248	222	346
고양이	50	38	104	240	357	328
기타동물	3	8	16	17	23	29

- O 어려운 경제여건 및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유기 사례가 많음.
-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구민들의 동물보호의식 향상으로 유기동물 신고와 동물보호론자 및 구민들의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.
- 💹 보호기간 : 20일(보호공고기간 10일, 입양대기시간 10일 운영)
- □ 보호비용(단가): 16만원/마리(평균가격) ○ 기존 10일 보호 비용 10만원 + 추가 10일 보호 6만원

의 유기동물 처리과정



### Ⅳ 위탁관리계획

- 위탁관리기간 : 2016. 03. 01. ~ 2019. 02. 28.(3년)
- 의 위탁관리방법 :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협약
- ☑ 지정업체수: 1개소
- 동물보호센터
  - O 신청대상
    - ① 신청대상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,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8조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로서
      - 1) 동물병원
      - 2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
      - 3)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
      - 4)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다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
        -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        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
    -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에 의거 보호시설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.
    - ③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, 영업(업무)정지,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(사업자)는 응모할 수 없음.
  - O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    - 1) 신청서(소정양식) 1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[별지 제4호 서식]
    - 2)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에 한함) 1부

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)1부

- 2) 인감증명서(법인은 법인인감) 1부-인감동장(사용인감계첨부) 지참
- 3)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대리인일 경우) 1부
- 4) 유기동물 보호관리 계획서 1부 (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포함)
- 5)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추가로 필요하는 서류 1부 (사본에는 "원본대조필")
  -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, 동물보호단체등록증 등
- 6)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실적(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
※ 유의사항: 제출된 서류의 위·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자는 사업신청자(계약 체결후에는 사업시행자)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.

#### 지정절차

- 모집공고(10일)
- O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접수
  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접수
-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기관(단체) 심사 선정(신청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)
  - 지정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포함
- 기본요건을 갖춘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 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 기관(단체)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
-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기관(단체) 선정 공표(통보)
- 선정된 기관(단체)과 협약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교부
  - 강남구와 동물보호센터 선정 기관(단체)과 협약
  -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(동물보호센터 지정서)

#### 일 정

- 모집공고 : 2016. 1. 18 ~ 27. (10일간)
- 접수기간 : 2016. 1. 28. 09:00 ~ 1. 29. 18:00(2일간)
  - 접수처 : 서울시 강남구청 4층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팀(☎ 02-3423-5514)
  -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 (우편·택배·팩스 접수불가, 토·공휴일 접수불가)
- 평가위원회 구성 : 2016. 2. 1 ~ 2. 17(신청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)
- 평가일시 : 2016. 2. 23(화) 14:00 ~

- 지정업체 알림 : 2016. 2. 24(수)
- 지정 대상 기관(단체) 협약서 체결 : 2016. 2. 24(수) ~ 2. 26(금)
-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· 운영(신청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)
  - O 운영목적
    - 지정신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· 운영
  - 구성 및 운영 : 지정을 위한 평가시만 구성 운영
    - 구 성
      -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상 9명이내로 구성하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구성
      - 위원장은 위원회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
    - 평가위원회 운영 :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평가시만 운영하고 평가 종료와 동시 해산
      - 위원회 정족수 : 위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 평가하여야 함.
    - 평가위원회 임무
      -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항
        목별 주관적 평가실시
  - 평가위원 선발 제한
    - 지정 신청한 동물보호센터의 임직원 및 소속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
    - 기타 평가위원으로 선발하면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구청장 이 판단하는 사람
-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  - 객관적(정량적) 평가(50점)
    - 시설장비 : 동물보호실(사육실), 동물구조차량, 포획장비
    - 인력현황 : 상근수의사 채용 및 경력, 구조인력수, 관리인력(동물보호, 시무관리)
  - 주관적(정성적) 평가(50점)
    - 사업계획 : 사업계획의 적정성, 효율성,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등
    - 민간협력 : 입양활성화 계획 및 실효성
- 동물구조보호비용 단가 산정 : 동물보호과-7592(2015.12.17.)에 의거함
  - 두당 평균가격으로 2016년도 적용가격은 서울시의 「동물보호정책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연구」용역보고서(2013.10월)의 "유기동물

보호관리사업 원가분석"의 '유기동물 구조·보호관리비'를 참고하여 서울시에서 책정한 16만원(20일 구조·보호조치 평균비용임)으로 함.

- 평가방법 : 객관적(정량적) 평가 및 주관적(정성적) 평가
  - 객관적(정량적) 평가 : 자치구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별로 평가함.
  - 주관적(정성적) 평가 : 평가위원이 신청 기관(단체)별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함
    - 평가는 지정신청서 제출 기관(단체)를 대상으로 사업계획내용 서면평가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음.
    - 주관적(정성적)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평가대상 기관(단체)별 평가점수 중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. 다만, 최고점수·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,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.
    - 평가대상이 2개 업체인 경우 평가배점은 "우수, 보통"의 평가점수에서 업체별 상대 평가하여야 함.

#### 평가결과 적용기준

- 신청 기관(단체)별 객관적(정량적) 평가와 주관적(정성적) 평가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출평균한 점수를 합한 점수를 더한 점수 중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(단체)를 지정동물보호센터로 선정함.
- 동점 처리기준
  - 객관적(정량적)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기관(단체)를 지정동물보호센터로 선정함.
    - 1. 시설 및 장비능력 점수 합계
    - 2. 인력평가 점수 합계
    - 3. 시설 및 장비능력 점수 중 동물보호실(사육실)상태 및 능력점수, 동물 구조차량 확보상태 점수 순
    - 4. 인력평가 점수중 구조인력, 관리인력, 상근수의사 점수 순
- 평가위원 수당 : 외부 평가위원에 대하여 **1회 10만원** 지급
- 의 위탁의 범위
  - O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단속, 포획·인수, 보호관리, 반환조치, 기증·입양 등 사후 조치

- O 관내 공원 및 대모산 등지에 야생화 되고 있는 방견의 단속
- O 보호중인 유기동물의 보호(사육)와 치료
-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보호
-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·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(사육)와 치료
- 유기동물의 위탁 보호기간: 보호소 입소일로부터 20일(보호공고기간, 10일, 입양대기기간 10일 운영) ※ 보호기간 이내 질병 김염 등 동물의 고통이 불기띠한 경우 수의사의 핀단에 따라 인도적 처리 가능
- **| | | 위탁관리비 지급 : 매월 발생되는 유기동물수를 지정된 단가로 합산하여 익월초에 지급**

# 

- **회 예산 : 48,000천원(2016년도예산, 구비-24,000천원 시비-24,000천원)**
- 에산과목: 지역경제과, 농업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,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지원, 유기동물 및 TNR위탁관리, 민간이전, 민간위탁금

## Ⅵ │ 기 대 효 과

- 길을 잃거나 버려지는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생활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
- 등히, 애완동물 및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, 보호시책 의무화 및 지자체의 동물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강화된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인해 주인 잃은 동물에 대한 기대 수요를 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대처

# Ⅷ 행정사항

- 지정 후 민원요청시 신속한 응대가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구축
  - 강남구청 홈페이지, 종합상황실 및 강남구청뉴스 등을 통해 홍보
  - 강남경찰서, 수서경찰서, 관내 119안전센터, 22개동주민센터로 공문시행

#### 붙 임: 1. 유기동물 보호관리 용역협약서(안) 1부.

- 2.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1부.
- 3. 동물보호 지정서 1부.
- 4. 동물보호센터 사업 계획서(안)
- 5.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배점 기준표.
- 6. 강남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표.
- 7.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표.
- 8. 평가대상 기관(단체)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집계표.
- 9.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집계표.
- 10.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순위.
- 11.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.
- 12. 지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서약서.

#### 참고자료 1. 평가위원자격.

- 2.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(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4).
- 3.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(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5).
- 4. 평가기준 산정기초자료.
- 5. 단가 기초산출자료. 끝.